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3층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31/ 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 국장 박석철[6573] 법무팀장 황찬하[6597] 팀원 지화영[6531]/ E-mail : kmanate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715-05153호

시행일자 2026. 8. 1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자격정지(면허취소) 중 의료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-8873호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(면허취소) 중
에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있음을 안내하였으니,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
고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23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자격정지(면허취소)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(NIMS)에서 마약류
를 투약 처방한 이력 있는 의사가 다수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시행

(주요 위반사례) ① 대진이가 진료처방하였으나 자격정지자가 EMR에서 로그아웃 하지 않아, NIMS(EMR
과 자동연동)에서는 자격정지자 명의로 마약류 투약처방 이력 입력

② 약국에서 약사가 자격정지된 의사명으로 처방전 입력 등의 오류가 다수 발생

※ 위 사례들의 경우 사안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. 이에, 자격정
지 중 EMR 및 NIMS에서 자격정지자 명의로 처방 등의 이력이 존재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※ 그 밖에 자격정지 중 낱짜 착오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들이 있으며, 이 또한 면허 취소 또는 자
격정지 대상 될 수 있음.

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1부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#수신처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
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